

2023년도 정밀의료사업단 비교과 현장실습 실습생 모집

강원지역혁신플랫폼 정밀의료사업단에서는 현장 실무 및 취업 역량 증진을 위한 「2023년도 정밀의료사업단 비교과 현장실습 프로그램」을 시행합니다. 강원지역 혁신플랫폼 참여대학 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.

2024. 1.

강원지역혁신플랫폼 정밀의료사업단장

I 운영개요

- 사업명: 2023년도 정밀의료사업단 비교과 현장실습 프로그램
- 운영내용: 산업·기업체 현장실습
- 실습기간: 2024. 1월 ~ 2월 내 운영(기관별 일정 상이)
- 실습시간: 주 5일(월~금) 09:00~18:00 내에서 운영 / 1인 최대 60시간
- 실습장소: 실습기관 사업장의 본사 또는 지사
- 실습대상: 강원지역혁신플랫폼 참여대학¹⁾ 재학생(학부생, 대학원생)
- 지원사항: 상해보험, 산재보험, 혁신인재지원금 지급(시간당 15,000원)
※ 별도 교통비, 식비 등 추가 지원 없음

II 운영내용

□ 모집기관

회사명	실습내용	일시	지역	모집인원	지원금
메디컬 아이피	인체 구조물 추출	(1차) 1. 22.(월)~1. 26.(금) 월~목 09:00~18:00, 금 09:00~12:00	서울	10명	525,000원
		(2차) 1. 29.(월)~2. 2.(금) 월~금 09:00~18:00		10명	600,000원
뉴엠	연구개발 및 생산 보조	1. 24.(수)~2. 6.(화) 14:00~17:00	춘천	3명	450,000원

1) 참여대학: 가톨릭관동대, 강릉영동대, 강릉원주대, 강원대, 강원도립대, 경동대, 상지대, 세경대, 송곡대, 송호대, 연세대(미래), 춘천교대, 한라대, 한림대, 한림성심대

회사명	실습내용	일시	지역	모집인원	지원금
지오비전	Person Attribute Dataset 등	1. 22.(월)~2. 2.(금) 10:00~17:00	춘천	30명	900,000원
제3의청춘	의료기기 연구개발 및 인허가	1. 22.(월)~2. 8.(목) 시간 협의(1일 4시간)	춘천	2명	900,000원
펠릭스디	인공 혈관 구조체 제작 등	1. 24.(수)~2. 6.(화) 10:00~17:00	춘천	2명	900,000원

※ 세부 일정 및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

□ 모집기관별 세부 내용: [붙임 1] 참고

III 신청 및 선정

□ 신청대상: 강원지역혁신플랫폼 참여대학 재학생(학부생, 대학원생)

□ 모집인원: 기관별 상이 ※ 기관별 세부 운영 내용 참고



□ 신청기간: ~ 2024. 1. 17.(수) 18시까지

□ 신청방법: 링크 또는 QR코드 접속 후 신청(<https://forms.gle/NYRUPj8bT3QRSpKi9>)

□ 제출서류

① [붙임2] 현장실습 참여신청서 및 현장실습 지원서 각 1부

② 재학증명서 1부

□ 제출방법: 신청URL에 응답한 후, 제출서류 파일 업로드

○ 파일명: 성명(대학명)_현장실습신청서 등

□ 선발방법: 서류평가를 통해 기업과 직무 적합성이 높은 신청자 순으로 선발하며 동점의 경우 우선순위 적용

○ 우선순위

1순위: 정밀의료융합전공 혁신인재

2순위: 정밀의료융합전공 참여대학 소속학생

3순위: 강원지역혁신플랫폼 참여대학 소속학생

○ 신청 가능 인원 초과 시 예비 명단 작성

○ 신청 취소 등 결원이 발생할 경우 예비 명단에서 충원(개별연락)

□ 결과발표: 2024. 1. 18.(목) 16시 / 강원지역혁신플랫폼 홈페이지

□ 우대사항: 정밀의료융합전공 혁신인재 및 부·복수전공생

□ 문 의: 정밀의료사업단 인재양성팀(033-250-7857)

Ⅲ 유의사항

- 재학생만 참여 가능, 2024년 2월 29일까지 휴학하지 않아야 함
(휴학생은 혁신인재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음)
- 개인적인 사정으로 현장실습 내용 변경 불가
- 비교과 현장실습은 학점을 부여하지 않음
- 현장실습 사전교육 1회 필참
 - 교육일시: 2024. 1. 19.(금) 14:00 ~ 15:00
 - 교육장소: 추후 공지(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 내)
- 제출서류 및 기재사항 미비, 누락으로 인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
- 무단 중도포기 및 제반서류 미제출 시 혁신인재지원금 지급 불가

<중도포기 예외 인정>

- ① 실습기관의 요청에 따라 부득이하게 실습을 중단하는 경우
- ② 천재지변, 산업안전사고, 업체부도, 상급 기관의 실습 허용 지침 변경 등
- ③ 기타 사유로 실습이 지속되기 어렵다고 사업단장이 인정하는 경우

- 붙임 1. 모집기관별 세부 운영 내용 1부
2. 비교과 현장실습 참여신청서(참여학생용) 1부. 끝.